
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

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안연월일 : 2025. 11. .

제안자 : 법제사법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의안명	대표발의자 (제출자)	발의(제출) 일자	심사경과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제2200714호)	민홍철의원	2024.6.20.	제417회 국회(임시회) 제2차 전체 회의(2024.8.23.) 상정 후 제안설명,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 회부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제2203208호)	한정애의원	2024.8.26.	제418회 국회(정기회) 제19차 전체 회의(2024.12.6.) 상정 후 제안설명,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 회부

제429회 국회(정기회)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(2025.11.19.)는 위
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, 이를 통합·조정하여 우리 위원
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.

제429회 국회(정기회) 제15차 법제사법위원회(2025.11.26.)는 법안심
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
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,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마

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.

2. 대안의 제안이유

현행법에 따르면 교정시설의 장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입수용자에게 미성년 자녀 보호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, 수용자가 자녀 보호를 위한 신청을 의뢰하는 경우 보호조치 의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의무가 있음.

그러나 이에 대해 부모 등 양육자가 수용되는 경우 남겨진 아동들에 대한 보호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.

최근 아동의 권리와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아동보호 정책이 강조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하여 수용자자녀에 대한 지원 및 보호조치 마련의 필요성 또한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수용자와 수용자자녀 간 원활한 접견을 위한 지원 등 수용자자녀 보호를 위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.

3. 대안의 주요내용

가. 법무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‘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’에 수용자자녀 지원 및 인권보호 방안을 포함하도록 함(안 제5조의2제2항제9의2호 신설).

나. 수용자자녀 보호를 위한 지원 방안의 다양화·구체화(안 제53조의2)

- 1) 소장은 수용자에 대하여 수용자자녀의 존재와 이익을 고려하여 처우하도록 함(안 제53조의2제1항).
- 2) 소장은 신입자에 대하여 수용자자녀의 양육환경을 조사하고, 신입자의 동의를 있는 경우 조사결과를 수용자자녀가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도록 함(안 제53조의2제2항).
- 3) 소장이 수용자와 수용자자녀간 원활한 접견을 위해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3조의2제4항·제5항 신설).
- 4) 법무부장관이 수용자자녀 보호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(안 제53조의2제6항 신설).

다. 법무부장관이 자녀가 있는 수용자를 수용할 교정시설을 결정하는 경우 수용자자녀의 주거지를 참작하도록 함(안 제53조의3 신설).

법률 제 호
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3조의2제2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수용자자녀(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서 그 부 또는 모, 양육하는 친족이 수용자인 아동을 의미한다. 이하 같다) 지원 및 인권보호 방안

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3조의2(수용자자녀 보호를 위한 지원) ① 소장은 수용자에 대하여 수용자자녀의 존재와 이익을 고려하여 처우하여야 한다.

② 소장은 신입자에 대하여 수용자자녀의 양육환경을 조사하고, 신입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조사결과를 수용자자녀가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.

③ 소장은 신입자에게 이 법과 「아동복지법」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수용자자녀의 권리 및 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, 수용자가 「아동복지법」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의뢰하려는 경우 보호조치 의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- ④ 소장은 수용자가 수용자자녀와 원활한 접견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⑤ 소장은 출소 후 자녀를 양육할 수용자에게 수용자자녀와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⑥ 법무부장관은 수용자자녀 보호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- ⑦ 제2항에 따른 양육환경 조사, 제3항에 따른 안내 및 보호조치 의뢰 지원, 제4항에 따른 접견 지원, 제5항에 따른 관계 회복 지원, 제6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·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.

제5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3조의3(수용자자녀를 위한 이송) 법무부장관은 자녀가 있는 수용자를 수용할 교정시설을 결정하는 경우 수용자자녀의 주거지를 참작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조의2(기본계획의 수립) ① (생략)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~ 9. (생략) <u><신설></u>	제5조의2(기본계획의 수립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. 1. ~ 9. (현행과 같음) 10. <u>수용자자녀(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서 그 부 또는 모, 양육하는 친족이 수용자인 아동을 의미한다. 이하 같다) 지원 및 인권보호 방안</u>
10. (생략) ③ ~ ⑤ (생략) 제53조의2(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보호에 대한 지원) ① 소장은 신입자에게 「아동복지법」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. ② 소장은 수용자가 「아동복지법」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의뢰하려는 경우 보호조치 의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	11. (현행 제10호와 같음) ③ ~ ⑤ (현행과 같음) 제53조의2(수용자자녀 보호를 위한 지원) ① 소장은 수용자에 대하여 수용자자녀의 존재와 이익을 고려하여 처우하여야 한다. ② 소장은 신입자에 대하여 수용자자녀의 양육환경을 조사하고, 신입자의 동의를 있는 경우 조사결과를 수용자자녀가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안내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 의뢰 지원의 방법·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③ 소장은 신입자에게 이 법과 「아동복지법」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수용자자녀의 권리 및 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, 수용자가 「아동복지법」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의뢰하려는 경우 보호조치 의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④ 소장은 수용자가 수용자자녀와 원활한 접견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⑤ 소장은 출소 후 자녀를 양육할 수용자에게 수용자자녀와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⑥ 법무부장관은 수용자자녀 보호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⑦ 제2항에 따른 양육환경 조사, 제3항에 따른 안내 및 보호조치 의뢰 지원, 제4항에 따른 접견 지원, 제5항에 따른 관계 회복 지원, 제6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·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

<신 설>

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.
제53조의3(수용자자녀를 위한 이
송) 법무부장관은 자녀가 있는
수용자를 수용할 교정시설을 결
정하는 경우 수용자자녀의 주거
지를 참작하여야 한다.